무배당 연금전환특약_(전환시점) 약관

제1관 목적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연금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 따라 약정한 "연금"을 지급하며 아래의 연금형태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종신연금형 :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2. 상속연금형
3. 확정연금형 : 기간선택형, 금액선택형

제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특약의 연금액 및 책임준비금 산출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8%를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 되며 공시이율이 0.4%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8%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4%)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8%)로 적립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생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6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기초서류의 적용】

① 이 특약은 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이 아닌 연금전환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에서 이 특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 연금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한 연금생명표를 사용합니다. 다만, 연금지급형태 중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8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전환전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한 후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은 연금전환시점에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③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연금지급 개시 전에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금 지급개시 후 보험기간의 확정연금형은 확정지급기간이 끝난 경우에, 종신연금형은 보증지급기간이 끝난 경우에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 자로 합니다.

1.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또는 종신연금형 중 개인연금형의 경우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 계약이 2명(3명, 여러 명(多人))보장 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등]중 1명]를 선택하여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종신연금형중 부부연금형의 경우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 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명]를 이 특약의 주피보험자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② 종신연금형 중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종피보험자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더 이상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연금형과 부부연금형의 적립액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점부터의 연금액은 개인연금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피보험자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0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 계약의 지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부터 보장개시일이 시작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을 연금전환일이라 하고, 이 특약에 대한 연금지급개시일 및 계약해당일은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 중 부부연금형에서 종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의 보험료를 납입할 때 연금지급형태(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또는 확정연금형)를 선택하여야 하며, 종신연금형 중 개인연금형의 경우에 계약자는 최소보증지급기간 이상 최대보증지급기간 이하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보증지급기간을 선택하여야 하며,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0.5 단위로 조기집중배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형 중 부부연금형의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90세 또는 100세) 및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종피보험자의 연금수령비율(50%,70% 또는 100%)을, 확정연금형 중 기간선택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을, 확정연금형 중 금액선택형의 경우에는 연금수령비율(5%, 10%, 15% 또는 20%)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④ 종신연금형 중 부부연금형의 선택은 제9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서 정하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나이가 모두 연금개시나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⑤ 제3항에서 “최소보증지급기간” 이란 10년(단,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10년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대여명으로 하며, 최소 5년으로 합니다.)을 말하며, “최대보증지급기간”이란 100에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차감한 연수를 말합니다.

⑥ 제5항에서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 통계표에 따른 성별 ·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를 말합니다.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보증지급기간 18년, 조기집중배수 3배) 예시】

150만원	150만원	…	150만원	1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
1차년~18차년 (보증지급기간 이내)					19차년~종신 (보증지급기간 이후)				

※ 조기집중배수 3배란?
보증지급기간 동안 매년 받는 연금액(위 예시의 경우 150만원)이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매년 받는 연금액(위 예시의 경우 50만원)의 3배임을 의미합니다.

※ 다만, 위 예시는 “조기집중배수”에 대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단순하게 예시한 것으로 공시이율, 조기집중배수 선택 등 실제 계약 속성에 따라 연금액은 달라집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제12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제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3조【적립금의 인출】

① 제10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상속연금형으로 선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지환급금의 범위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할 때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출후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최저보험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의 총 인출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인출금액 한도 = 전환전 계약의 실제 납입한 보험료 - 전환전 계약의 총 인출금액

제6관 분쟁의 조정 등

제14조【소멸시효】

①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설명】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3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15조【전환전 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1)

연금지급 기준표

■ “연금”(제2조)

※ 종신연금형 중 부부연금형의 선택은 제9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서 정하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나이가 모두 연금개시나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종신연금형

연금지급형태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전환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지급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계약자가 선택한 조기 집중배수가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종신연금형 (부부연금형)	주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전환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지급 (10년, 20년, 30년, 90세 또는 100세 보증 지급)
	주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70% 또는 100% 지급

2.상속연금형

연금지급형태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 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전환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 지급

3.확정연금형

연금지급형태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확정연금형 (기간선택형)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금전환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 동안 분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 확정지급)
확정연금형 (금액선택형)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금전환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정한 지급한도(다만, 연금개시시점 적립액의 5%, 10%, 15% 또는 20%에 해당하는 연금액 선택)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액 지급

주) 1. 연금액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공시이율은 연복리 0.8%를 최저보증합니다.

2. 확정연금형 중 금액선택형의 경우 연금지급 해당일에 책임준비금이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책임준비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3.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으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 계약자는 최소보증지급기간 이상 최대보증지급기간 이하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보증지급기간을 선택하여야 하며,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0.5 단위로 조기집중배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4. “최소보증지급기간” 이란 10년(단,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10년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대여명으로 하며, 최소 5년으로 합니다)을 말하며, “최대보증지급기간”이란 100에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차감한 연수를 말합니다.

5.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 통계표에 따른 성별 ·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를 말합니다.

6.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각 연금지급주기에 따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7.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연금형 중 기간선택형의 경우 확정지급기

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확정)지급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은 연금 연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일시금 수령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매년(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각 연금지급주기에 따라) 연금액이 지급되며, 상속연금형은 연금지급 개시 후 만1년(연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만1개월, 3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만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만6개월)이 지난 계약해당일부터 매년(연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3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매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매6개월)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5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관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기 간</th><th>지 급 이 자</th></tr>
<tr><td rowspan="3">연금
(제2조)</td><td rowspan="2">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td><td>보험기간 만기일 이내</td><td>공시이율</td></tr>
<tr><td>보험기간 만기 이후</td><td>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td></tr>
<tr><td colspan="2">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td><td>보험계약대출이율</td></tr>
<tr><td rowspan="2">해지환급금
(제12조
제1항)</td><td colspan="2">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td><td>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td></tr>
<tr><td colspan="2">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td><td>보험계약대출이율</td></tr>
</table>

주) 1.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소멸시효(제14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